

#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## ■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

서류제출 기간	2022년 9월 17일(토) ~ 9월 22일(목) 17시까지(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)
제출방법	방문예약 신청 후 견본주택 방문 접수
견본주택 위치	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14-1번지(대표번호 : ☎ 032-523-4800)
유의사항	- 기한 내에 아래 자격서류를 발급하시어 견본주택 방문 후,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-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점을 취소하며, 부적격 당점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※ 상기 제출증명서류는 최초 **입주자 모집공고일[2022.08.25.(목)]**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전체)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.

## ■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 서류

구분	서류유형		구비서류	기준	주요확인사항
	필수	해당			
공통	○		서약서	본인	· 견본주택 비치
	○	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본인	· 견본주택 비치
	○		인감증명서	본인	· 본인발급용에 한함.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(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)
	○		인감도장	본인	· 인감증명서 상 도장 대조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
	○		신분증	본인	·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)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본인	·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"상세"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"상세"로 발급
		○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배우자	·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대리인 접수 시 추가서류	○		위임장	본인	· 견본주택 비치
	○	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본인	· 본인발급용 확인(용도:주택공급신청 위임용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
	○		대리인 신분증	대리인	· 대리인 본인 확인
	○		대리인 도장	대리인	· 서명가능
주택관련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		해당자	·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	
			해당자	· 무허가 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	
			해당자	·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

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특별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(검증)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았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 등·초본,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.